

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-50블록 | 사전청약(일반공급) 자격확인서류

■ 서류접수 일정 및 장소

구분	서류제출 기간	서류제출 장소
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안내	2022년 04월 20일(수) ~ 25일(월) 현장접수처 방문 (10:00~17:00)	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-50블록 현장 접수처 (주소 :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00-4, CL타워 207호)

■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확인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구비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 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당첨자 추가 제출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 존·비속	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및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-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혼인관계증명서		본인	•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가족관계증명서		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	배우자	•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함) - 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	직계존속	•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○			직계비속	•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*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*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	○	복무확인서	본인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[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]
	○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주택		•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/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	○	인감증명서	청약자		• 용도: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.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인감도장	청약자		•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
	○	위임장	청약자	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. 접수장소에 비치
	○	신분증	대리인	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*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
*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, 사전공급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*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*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성명 및 관계,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